

2023.08.04.

학교법인 유 은 학 원 정 관

1947. 1. 11.
문보 제16호

정 관

학교법인 유 은 학 원

- 제 1차 개정 1962. 2. 14. (문관 제 685호)
- 제 2차 개정 1962. 5. 28. (문관 제1921호)
- 제 3차 개정 1964. 1. 30. (전남교문 1040. 3-331)
- 제 4차 개정 1964. 4. 27. (전남교문 1042. 3-1117)
- 제 5차 개정 1966. 12. 27. (전남교문 1042. 3-4528)
- 제 6차 개정 1972. 4. 10. (문정 1040-2610)
- 제 7차 개정 1973. 10. 25. (관리 1042.3-2882)
- 제 8차 개정 1975. 12. 6. (관리 1042.3-1677)
- 제 9차 개정 1977. 7. 7. (관리 1042.3-1031)
- 제10차 개정 1981. 9. 11. (관리 1042.3-1076)
- 제11차 개정 1984. 1. 5. (관리 1042.3-18)
- 제12차 개정 1986. 10. 14. (관리 25423-1222)
- 제13차 개정 1989. 12. 28. (관리 25422-747)
- 제14차 개정 1990. 11. 20. (관리 25422-735)
- 제15차 개정 1992. 5. 28. (행정 25422-370)
- 제16차 개정 1993. 3. 4. (행정 81423-192)
- 제17차 개정 1993. 10. 28. (행정 25422-682)
- 제18차 개정 1993. 12. 24. (행정 81422-1067)
- 제19차 개정 1995. 5. 12. (행정 81414-365)
- 제20차 개정 1995. 6. 20. (행정 81422-460)
- 제21차 개정 1996. 7. 25. (행정 81422-672)
- 제22차 개정 1998. 4. 9. (행정 81422-385)
- 제23차 개정 1998. 6. 25. (행정 81422-653)
- 제24차 개정 1998. 9. 4. (행정 81422-900)
- 제25차 개정 2000. 6. 21. (기예 81422-463)
- 제26차 개정 2000. 8. 23. (기예 81422-661)
- 제27차 개정 2000. 8. 31. (기예 81422-090)
- 제28차 개정 2001. 2. 27. (기예 81422-108)
- 제29차 개정 2001. 9. 13. (기예 81422-623)
- 제30차 개정 2002. 4. 10. (기예 81422-238)
- 제31차 개정 2002. 5. 11. (기예 81422-328)
- 제32차 개정 2003. 12. 17. (기예 81455-862) 고등학교 일반적 8급 1명 중, 기능적 1명 감
- 제33차 개정 2005. 09. 01. (기획예산과-5141)

제34차 개정 2005. 11. 25. (기획예산과-6808) 고등학교 2학년이상 7급정원에서 3년이상 근무시 6급으로 승진 조정함

제35차 개정 2006. 08. 07. (기획예산과-4957)

제36차 개정 2007. 02. 26. (기획예산과-1346)

제37차 개정 2007. 08. 09. (교육행정지원과-5694)

제38차 개정 2007. 10. 12. (교육행정지원과-8030)

제39차 개정 2008. 04. 04. (교육행정지원과-2769)

제40차 개정 2008. 06. 20. (교육행정지원과-4629)

제41차 개정 2008. 08. 08. (교육행정지원과-5716)

제42차 개정 2009. 03. 05. (교육행정지원과-2041)

제43차 개정 2010. 03. 03. (교육행정지원과-2002)

제44차 개정 2010. 07. 16. (교육행정지원과-6325)

제45차 개정 2011. 09. 07. (행정예산과-7905)

제46차 개정 2011. 12. 19. (행정예산과-12455)

제47차 개정 2012. 03. 02. (행정예산과-2375)

제48차 개정 2013. 12. 31. (행정예산과-15755)

제49차 개정 2013. 04. 03 (교육인사과-5637)

제50차 개정 정책기획관-953(2016.02.15.) 제35조(휴직의사유), 제36조(휴직의기간) 정책기획관-2350(2016.03.29.) 학교법인 정관개정 안내 (2013. 02. 05. 교원예우에 관한 규정 제6조 개정), (2016. 01. 27. 「교육공무원법」 개정), (2016. 02. 03. 「사립학교법」 개정),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 개선 권고에 따라 2016. 02. 15. 「광주광역시시립학교 운영위원회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개정)으로 정관 변경

제51차 개정 2016.12.30. (정책기획관-4307, 2016.6.20.) 교원징계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

제52차 개정 2017.7.21. 제68조(복무) 사무직원 복무에 관한규정

제53차 개정 2020.1.31.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제54차 개정 2020.5.28.

제55차 개정 2020.8.11. (정책기획과-5195, 2020.6.25.)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제66조(자격) 등 현행법에 맞춰 개정

제56차 개정 2020.11.30.(정책기획과-8019, 2020.9.29.) [알림]학교법인 정관 개정 안내에 따라 제15조의 2(개방이사), 제25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를 현행법에 맞춰 개정

제57차 개정 2021.2.25. (정책기획과-11390(2020.12.31.)) [안내]정관길라잡이 배부 안내에 따라 제40조의3(원로교사) 조항 신설

제58차 개정 2021.9.14.

제59차 개정 2021.12.1.

제60차 개정 2022.08.18.(정책기획과-3879(2022.04.04.)) [알림]학교법인 정관 개정 및 공개 방법 안내에 따라 현행법에 맞춰 개정

제61차 개정 2023.01.30.(정책기획과-13977(2022.12.27.)) [중요/알림] 「인건비 재정 결함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인사관리 지침」 일부 개정 추가 사항 안내에 따라 제67조의3(근속승진제) 현행법에 맞춰 개정

제62차 개정 2023.08.04.(미래교육기획과-5132(2023.05.11.)) [안내] 인건비 재결함 보조금 지원을 위한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 변경 안내에 따라 제68조의2(공로연수) 현행법에 맞춰 개정 (2022. 10. 18. 「교육공무원법」 개정) 가사휴직을 부양·돌봄이 필요할 때로 확대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법인은 대한민국의 교육이념에 입각(의거)하여 중등교육 및 상업에 관한 전문교육을 실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이 법인은 학교법인 유은학원(이하 “법인”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3조(설치학교) 이 법인은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학교를 설치·경영한다.

1. 광주동성고등학교
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3. 광주동성중학교
4. 광주동성여자중학교

제4조(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20에 둔다.<개정 2011.12.19>

제5조(정관의 변경) ① 이 법인의 정관의 변경은 이사 정수의 3분의 2이상의 찬성에 의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변경된 정관은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서류를 갖추어 14일 이내에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20.8.11.>

③ 제2항의 보고에 대하여 교육감이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시정하거나 변경하고, 그 사실을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5.28.]

제 2 장 자산과 회계

제 1 절 자 산

제6조(자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자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하되, 기본재산은 교육용기본재산과 수익용 기본재산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② 기본재산은 별도의 대장으로 관리하는 재산과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기본재산으로 정하는 재산으로 한다.<개정 2008.4.4>

③ 보통재산은 제2항에서 정하는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7조(재산의 관리) ① 제6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본재산의 매도·증여·교환 또는 용도를 변경하거나 담보에 제공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11조 제5항에 규정한 경미한 사항은 이를 관할청에 신고하여야 한다.

②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의 운영과 관리에 관하여는 법령과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이 있을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8조(경비와 유지방법) 이 법인의 경비는 기본재산에서 나는 과실 및 수익 사업의 수입과 기타의 수입으로 충당한다.

제 2 절 회 계

제9조(회계의 구분) ① 이 법인의 회계는 학교에 속하는 회계와 법인에 속하는 회계로 구분한다.

② 법인회계는 일반회계와 수익사업회계로 구분할 수 있다.

③ 학교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하고, 당해 학교의 장이 집행한다. 법인의 업무에 속하는 회계의 예산은 이사장이 편성하고 학교법인 이사회가 심의·의결하고 집행한다.<개정 2022.08.18.>

제10조(예산외의 채무부담) 수지예산으로써 정한 이외의 의무부담 또는 권리포기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관할청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제11조(세계잉여금의 처리) 이 법인에 속하는 회계의 매년도 세계잉여금은 차입금의 상환과 다음 연도에 이월 사용하는 분을 제외하고는 적립하여야 하며, 이 적립금은 기본재산으로 한다.<개정 2020.05.28.>

제12조(회계연도) 이 법인의 회계연도는 3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로 한다.<개정 2020.05.28.>

제 3 절 예산·결산자문위원회<삭제 2006.08.07.>

제12조의2(예산·결산자문위원회의 설치) <삭제 2006.08.07.>

제12조의3(위원회의 조직) ① <삭제 2006.08.07.>

② <삭제 2006.08.07.>

제12조의4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삭제 2006.08.07.>

② <삭제 2006.08.07.>

③ <삭제 2006.08.07.>

제12조의5(회의) <삭제 2006.08.07.>

제12조의6(위원회의 간사 등) ①<삭제 2006.08.07.>

② <삭제 2006.08.07.>

제4절 예산·결산 심의 및 공시

<신설 2006.08.07.><개정 2007.02.26.><개정2022.08.18.>

제12조의7(예산·결산의 공시) 제9조 제1항의 회계는 당해 학교 홈페이지에 1년간 공시하되, 예산은 매 회계연도 개시 5일 이전까지,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후 3개월 이내에 관할청에 보고하고 공시한다.

제12조의8(예산·결산의 심의) ① 학교회계의 예산은 학교의 장이 편성하며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이사회의 심의·의결로 확정한다.[개정 2022.8.18.]

② 학교회계 결산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본조 신설 2006.08.07.]<개정 2022.08.18.>

제 3 장 기 관

제 1 절 임 원

제13조(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8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개정 2007.08.09., 2007.10.12., 2010.07.16>

2. 감사 2인

제14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다음 각호와 같다. 다만, 최초의 임원 반수의 임기는 그 임기의 반으로 한다.

1. 이사 5년(중임 가능)<개정 2006.08.07.>

2. 감사 3년(1회에 한하여 중임)<개정 2006.08.07.>

② 보선에 의하여 취임하는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전임기간으로 한다.

제15조(임원의 선임방법) ① 이사와 감사는 이사회에서 선임하여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취임한다.

1. 임원의 성명·연령·임기·현직 및 주요경력 등 인적사항을 학교 홈페이지에 상시 공개하여야 한다.<신설 2006.08.07.><개정 2008.04.04.>

② 임기 만료전의 임원의 해임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한다.

<개정 2005.09.01., 2020.08.11.>

③ 임원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2개월 이내에 이를 보충하여야 한다.

④ 임원의 선임은 임기만료 2개월 전에 하여야 하며, 늦어도 임기개시 1개월 전에 관할청에 위임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필요시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사 후보자 추천을 요청할 수 있다.[신설 2020.05.28.]<개정 2020.08.11.>

제15조의2(개방이사) ① 개방이사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에서 추천한 인사 중에서 선임하여야 하는 이사(이하 “개방이사”라 한다)를 학교법인이 선임하고자 하는 때에는 선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5일(재직이사의 경우 임기만료 전 3월) 안에 추천위원회에 추천을 요청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4>

② 제1항의 요청에 따라 추천위원회가 개방이사를 추천하는 때에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할 수 있는 자를 추천하여야 한다.<개정 2008.04.04>

③ 법인의 개방이사 정수는 2명으로 한다.

④ 법인으로부터 추천 요청을 받은 추천위원회의 장은 30일 이내에 대상인원의 2배수를 추천하여야 한다. 다만, 동 기간에 추천이 없을 시에는 법인은 광주광역시교육청에 이사 후보자를 요청할 수 있다.<개정 2020.05.28., 2020.08.11.>

⑤ 법인은 개방이사 선임대상자를 추천 요청할 때에는 자격요건 등을 함께 제시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개방이사가 될 수 없다.<개정 2020.11.30.>

1.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
2. 해당 학교법인의 설립자와 「민법」 제777조의 친족관계에 있는 사람
3. 해당 학교법인의 임원(개방이사는 제외한다)이었던 사람
4. 해당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이었던 사람

[본조 신설 2006.08.07.]

제15조의3 (추천위원회)① 추천위원회는 법인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소집한다.

② 추천위원회 위원은 정수는 7인으로 하고 그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인에서 추천하는 자: 3인
2. 각급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추천하는 자: 4인
 - 가. 광주동성고등학교: 1인
 - 나.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1인
 - 다. 광주동성중학교: 1인
 - 라. 광주동성여자중학교: 1인

③ 추천위원회 의장은 위원의 호선으로 선출한다.

④ 그 밖의 추천위원회 운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은 추천위원회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6.8.7.][전문 개정 2008.4.4]

제16조(임원선임의 제한) ① 이사 정수의 반수 이상은 대한민국 국민이어야 한다.

②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4분의1을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개정 2006.08.07.>

③ 이사 중 적어도 1/3 이상은 교육경험이 3년 이상 있는 자야 한다.

④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

⑤ 감사 중 1인은 추천위원회에서 단수 추천한 자를 선임한다.<신설 2007.02.26.>
<개정 2008.04.04>

⑥ 제5항의 감사 추천 등에 대하여는 제15조의 2(개방이사)를 준용한다.<신설 2007.02.26>

⑦ <신설 2007.02.26><삭제 2020.01.31.>

⑧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임원으로 선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신설 2020.05.28.><개정 2022.08.18.>

1. 관할청으로부터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한자.
2. 사립학교 교원으로 재직 중 파면된 날부터 10년이 경과한자.
3. 관할청의 요구에 의해 학교의 장에서 해임된 날부터 6년이 경과한자.

제17조(이사장의 선출방법과 그 임기 등) ① 이사장은 이사의 호선으로 선출하여 취임한다.

② 이사장의 임기는 이사로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삭제 2007.02.26>

제18조(이사장 및 이사의 직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법인의 업무를 통리한다.

② 이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법인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결정하며,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9조(이사장 직무대행자 지정) ① 이사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이사장이 지명하는 이사가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② 이사장이 결위되었을 때는 이사회에서 지명하는 이사가 직무를 대행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이사장 직무대행자로 지명된 이사는 지체없이 이사장 선출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개정 2020.05.28.>

제20조(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를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비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 이를 이사회와 관할청에 보고하는 일
4. 제3호의 보고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하는 일
5. 법인의 재산상황과 회계 또는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이사장 또는 이사에게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21조(임원의 겸직금지) ① 이사는 감사 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겸할 수 없다. 다만, 학교의 장은 예외로 한다.

② 감사는 이사장·이사 또는 학교법인의 직원(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교원 기타 직원을 포함한다)을 겸할 수 없다.

③ 이사장은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사립학교의 장을 겸할 수 없다.<신설

2006.08.07.><개정 2008.04.04>

제 2 절 이 사 회

제22조(이사회 구성 및 기능 등) ① 이사회는 이사로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학교법인의 예산·결산·차입금 및 재산의 취득·처분과 관리에 관한 사항
2.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3. 학교법인의 합병 또는 해산에 관한 사항
4. 임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
5.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장 및 교원의 임용에 관한 사항
6. 법인이 설치한 학교의 경영에 관한 중요 사항
7. 수익사업에 관한 사항
8. 기타 법령이나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23조(이사회 개최 및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이사 정수의 과반수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개최하지 못한다.

② 이사회 의사는 이 정관에 특별히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정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개정 2005.09.01.,2006.08.07>

제24조(이사회 의결 제척사유) 이사장 또는 이사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 할 때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 및 학교의 장의 선임과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임원 자신이 법인과 직접 관계되는 사항

제25조(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이사장 또는 이사장 직무대행이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7일 전까지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소집일자, 장소 등을 공지하고, 회의의 목적을 명시하여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이사 전원이 집합되고 또 그 전원이 이사회 개최를 요구한 때에는 예외로 한다.<개정 2022.08.18.>

제25조의2(이사회 회의록 공개) ① 이사회는 회의 종결 후 10일 이내에 당해 회의록

을 학교 홈페이지를 통하여 1년 동안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사립학교법시행령 제 8조의2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은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08.04.04., 2020.11.30.>

② 제1항의 단서에 따라 이사회 회의록을 공개하지 아니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사회에서 회의록의 공개여부 및 공개범위 등을 의결하여야 한다.<신설 2008.04.04.>

[본조 신설 2006.08.07.]

제26조(이사회 소집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 요구가 있을 때에는 그 소집 요구 일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사회가 개최될 수 있도록 7일 이내에 회의소집통지를 하여야 한다.

1. 재적이사 반수 이상이 회의의 목적을 제시하여 소집을 요구한 때
2. 제20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또는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회의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찬동으로 소집할 수 있다. 다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할 경우에는 관할청의 승인을 얻어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개정 2006.08.07.>

제 3 절 사학윤리위원회

제26조의2(사학윤리강령 준수 등) ① 이 법인은 법인 및 학교운영에 있어 “사학윤리강령”을 준수한다.

② 이 법인 및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투명한 운영을 위하여 사학윤리위원회 활동에 협조하고 그 결정 사항을 준수한다.

[본조 신설 2005.09.01]

제 4 장 수익사업

제27조(수익사업의 종류) 이 법인이 설치하여 유지·경영하는 학교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기본재산 임대수입 사업
2. 주식배당 수입
3. 예금이자 수입
4. 기타수입증대를 위한 각종 사업

제28조 내지 제30조 (삭 제)

제 5 장 해 산

제31조(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얻어 교육감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개정 2005.09.01., 2008.04.04., 2020.05.28.>

제32조(잔여재산의 귀속) 이 법인을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합병 및 파산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립학교법」 제35조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다.<개정 2005.09.01., 2008.04.04., 2020.05.28.>

제33조 (청산인) 이 법인이 해산한 때에는 청산인은 해산 당시의 이사 중에서 선출하되 교육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개정 2005.09.01., 2008.04.04., 2020.5.28.>

제 6 장 교 직 원

제 1 절 교 원

제 1 관 임 용

제34조(임용) ①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하되, 그 임기는 4년으로 한다. 다만, 1회에 한하여 중임 할 수 있다.<개

정 2006.08.07>

② 학교의 장 이외의 교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용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권자가 교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임용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 학교의 장이 아닌 교원의 신규채용은 사립학교법 제53조의 2 제10항 및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에 따라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하며, 공개전형은 필기시험을 포함하여야 하고, 필기시험은 교육감에게 위탁하여 실시한다.<신설 2005.09.01.><개정 2020.05.28., 개정 2022.08.18.>

⑤ 공개전형으로 채용하는 교원임용에 있어서는 당해 학교의 건학이념을 구현하는데 필요한 요건을 갖춘 자로 제한 할 수 있다. <신설 2005.09.01.>

⑥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의 장에게 위임한다. 소속학교의 장은 교원을 휴직 및 복직에 임용한 날부터 7일 이내 관할청과 이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신설 2021.09.14.><개정 2022.08.18.>

제34조의2(기간제 교원) ① 임용권자는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교원자격증을 가진 자 중에서 기간을 정하여 임용하는 교원(이하 “기간제 교원”이라 한다)을 임용할 수 있다. 이 경우 임용권자는 그 권한을 학교의 장에게 위임 할 수 있다.<개정 2012.03.02.>

1. 교원이 제 35조의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2. 교원이 파견·연수·정직·직위해제 또는 휴가 등으로 1월이상 직무에 종사할 수 없어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 때
3. 파면·해임 또는 면직처분을 받은 교원이 「교원의 지위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하여 후임자의 보충발령을 하지 못하게 될 때
4. 특정교과를 한시적으로 담당할 교원이 필요한 때

②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이 만료되면 당연히 퇴직된다.

③ 기간제교원의 임용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 3년의 범위 내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34조의3(퇴직교원의 기간제교원 임용) ① <삭제 2021.12.01.>

② <삭제 2021.12.01.>

제34조의4(임명의 제한) ①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학교장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사립학교법 제20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취임승인이 취소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2. 사립학교법 제54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해임요구에 의하여 해임되고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3. 사립학교법 제61조의 규정에 의하여 파면되고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교육공무원법」 제10조의4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개정 2020.05.28.>

② 제1항제1호 내지 제3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임명의 제한 기간이 경과한 자가 학교의 장으로 취임하고자 할 때에는 재적이사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요한다.<개정 2008.06.20>

③ 학교법인 이사장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관계에 있는 자는 당해 학교법인이 설치·경영하는 학교의 장에 임명될 수 없다. 다만, 이사정수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과 관할청의 승인을 받은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06.20>

1. 배우자
2.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과 그 배우자

④ 제1항제4호에 해당하는 자는 교원으로 임명될 수 없다.

[본조 신설 2006.08.07]

제34조의5(산학겸임교사 등) ① 교육과정운영상 필요한 경우 교원외에 산학겸임교사·명예교사 또는 강사등을 두어 학생의 교육을 담당하게 할 수 있다.

②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개정 2020.05.28.>

③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2조제1항의 별표 2의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로서 임명권자가 임용하며, 임명권자는 그 임용권한을 학교장에게 위임한다. 이때 학교장은 산학겸임교사 등을 임용한 경우 이사장에게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05.28.>

④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3.5]

제34조의6(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 교원의 신규채용을 위한 공개전형 채용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자에 대하여는 「교육공무원법」 제11조의2를 준용한다.

제34조의7 (전형결과의 공개) ① 공개전형에 응시한 사람이 전형결과 등의 공개를 요구할 경우에는 신규채용자가 확정된 후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의한 정보 공개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시행령」 제21조 제5항에 의한다.<개정 2020.08.11.>

[본조신설 2020.05.28.]

제 2 관 신분보장

제35조(휴직의 사유) ① 교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원하는 경우에는 당해 교원의 임용권자에게 위임받은 학교의 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내지 제4호 및 제11호의 경우에는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휴직을 명하여야 하고, 제7호 및 제7의2호의 경우에는 본인이 원하는 경우 휴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20.08.11.,2021.12.01.>[시행 2022.02.11.]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장기의 휴양을 요할 때(불임·난임으로 인하여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우를 포함한다.)<개정 2020.05.28.>
2. 「병역법」에 의한 병역의 복무를 위하여 징집 또는 소집된 때
3. 천재·지변 또는 전시·사변이나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생사 또는 소재가 불명하게 된 때
4.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직무를 이탈하게 된 때
5. 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 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6. 국제기구, 외국기관, 국내외의 대학·연구기관, 국가기관, 재외국민교육기관(재외국민의 교육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재외교육기관을 말한다) 또는 교육공무원임용령 제19조의3에서 정하는 민간단체에 임시로 고용될 때<개정 2020.08.11.>
7. 만8세 이하(취학 중인 경우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여성 교원이 임신 또는 출산하게 된 때
<개정 2008.04.04., 2011.09.07., 2020.08.11.>

7의2. 만 19세 미만의 아동(제7호에 따른 육아휴직의 대상이 되는 아동은 제외한다)을 입양하는 경우<신설 2011.09.07>

8. 교육부장관이 지정하는 국내의 연구기관이나 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 때
<개정 2008.04.04>

9. 조부모,부모(배우자의 부모를 포함한다), 배우자, 자녀 또는 손자녀를 부양하거나 돌보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만, 조부모나 손자녀의 돌봄을 위하여 휴직할 수 있는 경우는 본인 외에 돌볼 사람이 없는 등 대통령령등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경우로 한정한다.<개정 2023.08.04.>

10. 배우자가 국외근무를 하게 되거나 제5호에 해당하게 된 때

11. 교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 전임자로 종사하게 된 때

12.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 제31조에 따른 재직기간 10년 이상인 교원이 자기 개발을 위하여 학습·연구 등을 하게 된 경우

13. <삭제 2020.8.11.>

② 임용권자에게 위임 받은 학교의 장은 제1항제7호 및 제7의2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을 이유로 인사상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동호의 휴직기간은 근무기간에 산입한다.<개정 2020.08.11.,2021.12.01.>[시행 2022.02.11.]

제36조(휴직의 기간) ① 교원의 휴직기간은 다음과 같다.

1. 제35조 제1항의 제1호의 규정에 의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1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에 따른 직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한 휴직 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2. 제35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복무기간이 끝날 때까지로 한다.<개정 2020.08.11.>

3. 제35조 제1항 제3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한다.<개정 2020.08.11.>

4. 제35조 제1항 제5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 다만, 학위취득을 하려는 경우에는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 할 수 있다.<개정 2020.8.11.>

5. 제35조 제1항 제6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고용기간으로 한다.

6. 제35조 제1항 제7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자녀 1명에 대하여 3년 이내로 하되 분할하여 휴직할 수 있다.

6의2. 제35조 제1항 제7의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입양자녀 1명에 대하여 6개월 이내로 한다.<신설 2011.09.07.>

7. 제35조 제1항 제8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한다.<개정 2020.08.

11.>

8. 제35조 제1항 제9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9. 제35조 제1항 제10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3년의 범위 안에서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총 휴직기간은 배우자의 국외근무, 해외유학, 연구 또는 연수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10. 제35조 제1항 제11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그 전임자로 종사하는 기간으로 한다.

11. 제35조 제1항 제12호의 사유로 인한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재직기간 중 1회에 한한다.

② 제1항 제6호 또는 제9호에 따라 2년 이상 휴직한 교원은 복직하려면 「교육공무원법」 제45조 제3항을 준용하여 연수를 받아야한다.<개정 2020.08.11.>

제37조(휴직교원의 신분) ① 휴직중의 교원은 신분을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② 휴직기간중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30일 이내에 임용권자에게 위임받은 학교의 장에게 이를 신고 하여야 하며, 학교의 장은 지체없이 복직을 명하여야 한다.<개정 2005.09.01., 2021.12.01.>[시행 2022.02.11.]

③ 제35조 제1항 제3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직기간이 만료된 교원이 30일 이내에 복귀를 신고한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

④ 제34조 제6항에 따라 위임받은 학교의 장은 교원의 휴직 및 복직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자에 보고하여야 한다<신설 2021.12.1.>[시행 2022.02.11.]

제38조(휴직교원의 처우) 제35조에 따라 휴직한 교원에게는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등을 준용한다. <개정 2020.05.28.>

제39조(직위해제 및 해임) ① 임용권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직무수행 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또는 교원으로서 근무태도가 심히 불성실한 자

2.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3.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에는 제외한다)

4. 금품비위, 성범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위행위로 인하여 감사원 및 검찰·경찰 등 수사기관에서 조사나 수사 중인 사람으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하

고 이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기대하기 현저히 어려운 자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한 경우에 그 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지체없이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③ 임용권자는 제2항 제1호에 의하여 직위해제된 자에 대하여 3월 이내의 기간 대기를 명한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에 대하여는 임용권자는 능력회복이나 태도개선을 위한 연수 또는 특별한 연구과제의 부여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제1호와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의 직위해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제2호·제3호 또는 제4호를 사유로 직위해제 처분을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명령을 받은 자가 그 기간중 능력의 향상 또는 개선의 정이 없다고 인정된 때에는 임용권자는 교원 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면직시킬 수 있다.

제39조의2(면직의 사유) ① 사립학교의 교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당해 교원의 이사장은 이를 면직시킬 수 있다.

1.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로 1년 이상 직무를 감당하지 못할만한 지장이 있을 때
2.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때
3. 정부를 파괴함을 목적으로 하는 단체에 가입하고 이를 방조할 때
4. 정치운동을 하거나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하거나 또는 어느 정당을 지지 또는 반대하기 위하여 학생을 지도·선동한 때
5. 인사기록에 있어서 부정한 채점·기재를 하거나 허위의 증명이나 진술을 할 때

② 제1항의 제2호 내지 제5호의 사유에 의하여 면직시키는 경우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본조 신설 2006.08.07]

제39조의3(의원면직의 제한) ① 임용권자는 의원면직을 신청한 교원이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의원면직을 허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호·제3호 및 제4호의 경우 그 비위 정도가 「국가공무원법」 제79조에 따른 파면·해임·강등·정직에 준하는 정도의 징계(이하 “중징계”라 한다)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비위와 관련하여 형사사건으로 기소 중인 때
2. 교원징계위원회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 중인 때
3. 감사원·검찰·경찰 및 그 밖의 수사기관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조사 또는

수사 중인 때

4. 관할청의 감사부서 등에서 비위와 관련하여 감사 또는 조사 중인 때

② 임용권자는 교원이 의원면직을 신청한 경우 해당 교원이 제1항에 따른 의원면직의 제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감사·조사 및 수사기관의 장에게 확인하여야 한다.

제40조(보수) 교원의 보수는 공무원보수규정 및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개정 2005.09.01.>

제40조의2(교원의 정년) 교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교육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의3(원로교사) 제40조의2에 따른 정년 전에 임기가 끝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는 사람(교사자격증을 가진 사람만 해당한다)은 수업 담당 능력과 건강 등을 고려하여 교사로 임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1.02.25.]

제41조(의사에 반한 휴직·면직 등의 금지) ① 교원은 형의 선고·징계 처분 또는 사립학교법이 정하는 사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휴직 또는 면직 등 부당한 처분을 당하지 아니한다. 다만, 학급·학과의 폐쇄에 의하여 폐직이나 과원이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교원은 권고에 의하여 해직을 당하지 아니한다.

③ 교원은 징계처분 기타 그 의사에 반한 불리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때에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

제41조의2(명예퇴직수당) ① 교원으로서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른 재직기간이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로부터 최소한 1년전에 스스로 퇴직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20.05.28.,2020.08.11.>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우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8.>

③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면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3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면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 선정을 위하여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하고 이사회는 30일 이내에 이를 심의·의결하여야 한다.

3. 임면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 제3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5.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제41조의3(특별승진) ①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교원 중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41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전문 개정 2009.3.5]

제41조의4(후임자 보충발령의 유예) 교원이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과면 또는 해임되거나 근무성적 불량으로 면직되었을 때에는 그 처분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후임자의 발령을 하지 못한다.

제 3 관 교원인사위원회

제41조의5(교원인사위원회 설치)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의 임용등 인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게 하기 위하여 당해 학교에 교원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개정 2006.08.07.>

제41조의6(인사위원회의 기능)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원의 보직에 관한 사항
2. 교원의 연수대상자 및 포상대상자 추천에 관한 사항
3. 기타 학교의 장이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필요로 한다고 인정하는 사항
4. 교원(교장 제외)의 임용에 관한 사항<신설 2006.08.07.><개정 2020.05.28.>
5. 공개전형의 시행에 관한 사항<신설 2006.08.07.>

제41조의7(인사위원회의 조직) ① 인사위원회는 학교별로 학교의 장이 임명하는 10인 이내의 교원으로 조직하되, 민주적이고 합리적으로 조직한다.<개정 2020.5.28.>

② 인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 이내로 하되, 중임할 수 있다.

제41조의8(인사위원회위원장 및 직무) ①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당해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② 인사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③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1조의9(인사위원회의 회의 소집 등) ① 인사위원회의 회의는 학교의 장의 요청이 있을 때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41조의10(회의록 작성) ① 인사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당해 학교의 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회의록에는 위원장을 포함한 출석위원 2인 이상이 서명·날인한다.

제41조의11(인사위원회의 간사 등) ① 인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를 당해 학교의 교직원 중에서 학교의 장이 임명한다.

제41조의12(운영세칙) 인사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이를 정한다.

제 2 절 교원징계위원회

제42조 (삭제)

제4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① 교원의 징계사건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학교법인에 교원징계위원회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교원징계위원회는 9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개정 2011.12.19., 2020.8.11., 2022.08.18.>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해당학교의 교원 또는 학교법인의 이사
2.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가. 법관, 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 나. 대학에서 법학, 행정학 또는 교육학을 담당하는 조교수 이상으로 재직 중인 사람
- 다. 공무원으로 20년 이상 근무하고 퇴직한 사람
- 라. 학교운영위원회의 학부모위원(「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경우로 한정한다.)<신설 2022.08.18.>
- 마. 그 밖에 교육이나 교육행정에 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하다고 인정되는 사람

- ④ 교원징계위원회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구성한다.
 1. 제3항 제2호에 따라 위촉된 위원(이하 “외부위원”이라 한다)을 최소 2명 이상 포함할 것<개정 2022.08.18.>
 2. 외부위원은 학교법인 또는 해당 학교에 소속된 사람이 아닐 것
 3. 학교법인의 이사인 위원 수가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
 4.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경우에는 외부위원에 제3항제2호 라목에 따라 위촉된 위원을 최소 1명 이상 포함할 것<신설 2022.08.18.>
 5. 특정 성(性)이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할 것<신설 2022.08.18.>

제43의2(외부위원의 임기 등) ①외부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 ②외부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5. 제49조의3에 따른 비밀누설금지위무를 위반한 경우

제44조(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 선출 및 직무) 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장은 위원의

- 호선으로 선출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리한다.
 - ③ 교원징계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④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 중에서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 제45조(징계의결의 기한)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의결 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징계에 관한 의결을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위원회의 의결로 30일의 범위 안에서 1차에 한하여 그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제46조(제척사유) 교원징계위원회 위원은 그 자신에 관한 징계사건을 심리하거나 피징계자와 친족관계가 있을 때에는 당해 징계사건의 심리에 관여하지 못한다.
- 제46조의2(위원의 기피 등) ① 징계대상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이 불공정한 의결을 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상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실을 서면으로 소명하고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이 있는 때에는 위원회의 의결로 기피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을 받은 자는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 ③ 제46조의 규정에 의한 제척 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로 교원징계위원회의 출석위원이 재적위원이 3분의 2에 미달되어 징계사건을 심리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교원징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의 수가 재적위원수의 3분의 2이상이 될 수 있도록 위원의 임용권자에게 임시위원의 임명을 요청하여야 한다.
- 제46조의3(징계의결 요구사유 통지) 교원의 임용권자가 교원에 대한 징계의결을 요구할 때에는 징계의결요구와 동시에 징계대상자에게 징계사유를 기재한 설명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 제47조(진상조사 및 의견의 개진) ①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리함에 있어서 진상을 조사하여야 하며, 징계의결을 행하기 전에 본인의 진술을 들어야 한다. 다만, 2회 이상 서면으로 소환하여도 불응한 때에는 그 사실을 기록에 명시하고 징계의결을 할 수 있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관계인을 출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제48조(징계의결) ① 징계의결은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행하여야 한다.
- ② 교원징계위원회는 징계사건을 심의한 결과 징계를 의결한 때에는 주문과 이유

를 적은 징계의결서를 작성하여 임용권자 및 관할청에 보내어 알려야 한다.<개정 2022.08.18.>

③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징계를 요구받은 사항에 대하여 징계의결서를 받았을 때에는 징계처분을 하기 전에 그 내용을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8.18.>

④ 임면권자가 제2항이 통고를 받은 때에는 그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의결내용에 따라 징계처분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임명권자가 법인인 때에는 징계처분권을 이사장에게 위임한다.

⑤ 징계처분권자는 징계처분의 사유를 기재한 결정서를 당해 교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⑥ 임용권자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및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성희롱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4항에 따라 징계처분의 사유를 적은 결정서를 교부할 때에는 피해자가 요청하는 경우 그 징계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22.08.18.>

⑦ 임용권자는 관할청으로부터 제삼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교육청의 징계심의위원회에 제삼의를 요구하여야 한다.<신설 2022.08.18.>

⑧ 교원징계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제49조(징계의결서의 정상참작 등) 교원징계위원회가 징계사건을 의결함에 있어서는 징계대상자의 소행, 근무성적, 공적, 개전의 정, 징계요구의 내용, 기타 정상을 참작하여야 한다.

제49조의2(징계사유의 시효) ① 임용권자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없다. 다만, 징계사유가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5년 이내에,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년 이내에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개정 2020.08.11.>

1.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경우
2.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3. 「교육공무원법」 제5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경우

②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못하여 제1항의 기간이 지나거나 그 남은 기간이 1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1항의 기간은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에 따른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날에 끝나는 것으로 본다.

③ 징계위원회의 구성·징계의결 기타 절차상의 하자나 징계양정의 파다를 이유로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에 따른 교원소청심사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무효 또는 취소의 결정이나 판결을 한 때에는 제1항의 기간이 경과하거나 그 잔여기간이 3월 미만인 경우에도 그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제49조의3(비밀누설의 금지) 교원징계위원회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50조(교원징계위원회의 간사 등) ① 교원징계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게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와 서기는 교원징계위원회가 설치된 당해기관 소속직원 중에서 그 임용권자가 임명한다.

제51조(운영세칙) 교원징계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당해 교원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 3 절 제52조 내지 제65조(삭제)

제 4 절 사무직원

제66조(자격) ① 사무직원(일반직 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등을 포함한다. 이하 “일반직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 제31조(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무직원으로 임용될 수 없다.<개정 2014.04.23., 2020.08.11.>

1. ~ 7. <삭제 2020.08.11 .>

②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에 있어서는 학력에 제한을 두지 아니한다. 다만, 기술직 및 기능직은 임용될 직종에 관한 자격증·면허증 기타 임용권자가 필요로 하는 자격이 있는 자를 인사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우선 임용할 수 있다.

③ 재직중인 일반직원이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당연 퇴직한다.

제67조(임용) ① 일반직원의 신규임용·승진·근속승진·승급·진직·진보·강임·휴직·직위해제·복직·면직·해임 및 파면(이하 “임용”이라 한다)은 공개전형에 의하도록 한다.<개정 2005.9.1., 개정2022.08.18.>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임용에 있어서 그 시험과목·방법·절차 등에 관하여는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③ 일반직원은 이사장이 임용하되, 학교 소속 일반직원은 당해 학교의 장의 제청이 있어야 한다.

④ 사무직원중 당해 계급에서 승진 최저년수 이상 근무하고 승진임용의 제한 사유가 없으며, 근무실력이 우수한자를 바로 상위 직급의 대우사무직원(이하“대우사무직원”이라 한다)으로 선발 할 수 있다.

⑤ 대우사무직원의 선발 및 수당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직원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67조의2(일반직원의 정년) ① 일반직원의 정년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법의 정년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본조변경 2020.05.28.]

② 사무직원의 당연퇴직에 대하여는 「지방공무원법」 제61조제1호를 준용한다. 이 경우 “공무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신설 2022.08.18.>

제67조의3(근속승진제) ① 임용권자는 학교소속 일반직 교육행정 7급이하 및 일반직 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7급이하 사무직원중 근속승진 소요연수이상 성실하게 근무하고 근무실적이 양호한 자에 대해서는 공무원임용령 등 인사관계 법령에 따라 근속승진제에 의하여 각각 상위 직급으로 승진 임용할 수 있다.<개정 2008.04.04., 2014.04.23., 2023.01.30.>

② 근속승진으로 승진 임용된 자에 대해서는 정관의 정원기준을 초과한 별도의 현원으로 관리한다.

[본조 신설 2002.05.11.][본조 변경 2020.05.28.]

제67조의4(사무직원 명예퇴직제)①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정년 잔여 1년 이상의 기간 중에 스스로 퇴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명예퇴직을 할 수 있다.<개정 2020.08.11.>

②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 수당 등의 지급과 관련하여 관할청의 지원을 받는 경

우 「지방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8.>

③ 임용권자는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명예퇴직수당 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1. 임용권자는 지급대상자의 범위, 신청기간, 지급방법, 지급일, 기타수당지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여 수당지급일 20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2. 임용권자는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로 결정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학교장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3. 제2호에 의한 명예퇴직대상자는 그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사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4.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9.03.05.][본조변경 2020.05.28.]

제67조의5(특별승진) ① 특별승진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무직원중에서 자체 심사를 거쳐 승진임용 할 수 있다.

1. 재직 중 공적이 특히 현저한 자가 제67조의 4의 규정에 의하여 명예 퇴직할 때
2. 재직 중 공적이 특히 뚜렷한 자가 공무로 사망한 때

② 기타 필요한 사항은 인사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08.03.05.][본조변경 2020.05.28.]

제68조(복무) 일반직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관할교육청 지방공무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 한다.<개정 2008.04.04., 2020.05.28.>

제68조의2(공로연수) 사무직원 정년퇴직 예정자의 사회적응 능력 배양 및 준비를 위한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거하여 공로연수를 시행한다. 다만, 징계처분(징계절차가 진행중인 경우 등은 처분여부 확정시 까지 보류)을 받은 후 그 처분이 종료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연수대상에서 제외한다.[본조신설 2020.05.28.][개정 2023.08.04.]>

제69조(보수) 일반직원의 보수는 지방공무원 보수 규정 및 지방공무원수당등에 준용하여 지급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70조(신분보장) 일반직원의 신분보장에 관하여는 지방공무원에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0.05.28., 개정 2022.08.18.>

제71조(징계 및 재심청구) ①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②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제 7 장 직 제

제 1 절 법 인

- 제72조(법인사무조직) ① 이 법인의 업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법인 사무과를 두며, 법인실장은 서기관 또는 사무관으로 보한다.<개정 2014.04.23.>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분장업무는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제 2 절 고등학교

- 제73조(교장 등) ① 고등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20.5.28.>
- 제74조(하부조직) 고등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사무관으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학교장이 정한다. 또한, 관할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4.04.23., 개정 2020.05.28.>

제 3 절 중 학교

- 제75조(교장 등) ① 중학교에 교장 1인과 교감 1인을 둔다.
- ② 교장은 교무를 통할하고, 소속 교직원을 지휘·감독하며, 학생을 지도하고, 학교를 대표한다.
- ③ 교감은 교장을 보좌하며, 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 ④ 교사는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학생을 교육한다.<신설 2020.05.28.>

제76조(하부조직) 중학교에 행정실을 두고, 행정실장은 주사로 보하되, 그 분장 업무는 학교장이 정한다. 또한, 관할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개정 2014.04.23., 개정 2020.05.28.>

제77조 내지 제81조(삭제)

제 8 절 정 원

제82조(정원) 법인 및 각급학교에 두는 일반직원의 정원은 각각 별표 1 및 별표 2와 같다. 또한, 관할 교육청 「사립학교 사무직원 인사관리 지침」에 의한다.<개정 2003.12.24., 2005.12.16., 2020.05.28.>

제 8 장 학교운영위원회

제83조(학교운영위원회의 설치) 초·중등교육법(이하“법”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 의거 학교운영의 주요사항에 대하여 심의를 구하고, 자율성 및 지역의 실정과 특성에 맞는 다양한 교육을 창의적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광주동성고등학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에 학교운영위원회(이하“운영위원회”라 한다)를 구성·운영한다.<개정 2022.08.18.>

제84조(운영위원회의 기능) ①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법 제32조제1항에서 제7호 및 제8호의 사항은 제외하고,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자문한다.

1. 학교의 예산안과 결산
2. 학교교육과정의 운영방법
3. 교과용 도서와 교육 자료의 선정
4. 교복·체육복·졸업앨범 등 학부모 경비 부담 사항
5. 정규학습시간 종료 후 또는 방학기간 중의 교육활동 및 수련활동
6. 학교운영지원비의 조성·운영 및 사용
7. 학교급식

8. 대학입학 특별전형 중 학교장 추천
 9. 학교운동부의 구성·운영
 10. 그 밖에 대통령령이나 광주광역시 조례로 정하는 사항
 11. 기타 학교장이 심의 요청한 사항
 12. 추천위원회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
<신설 2008.4.4.>, <개정 2022.08.18.>
 - ② 운영위원회는 학교발전기금의 조성·운용 및 사용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심의·의결한다.
 - ③ 법 제32조제1항제11호의 학교운영에 대한 제안 및 건의사항은 위원 1명의 소개를 얻어 제안 및 건의서를 제출하여야 하며, 그 절차 등에 관하여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이하“규정”이라 한다)으로 정한다.<개정 2011.09.07.>
 - ④ 운영위원회는 학부모가 경비를 부담하는 제1항제2호의 사항을 자문할 때에는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미리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신설 2011.09.07.>
 1. 학교 홈페이지
 2. 학부모 총회
 3. 가정통신문
 4.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 의결로 정한 방법
 - ⑤ 운영위원회는 학생대표가 학교의 학교생활에 관련된 사항에 관하여 다음 각호중 하나의 방법으로 학생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운영위원회에 제안하게 할 수 있다.<신설 2011.09.07.>
 1. 학생 설문조사
 2. 총학생회(대의원회)
 3. 그 밖에 운영위원회에서의 의결로 정한 방법
 - ⑥ 운영위원회는 제5항에 따른 제안의 자문결과를 자문후 7일 이내에 학생대표에게 통보하여야 한다.<신설 2011.09.07.>
 - ⑦ 정관에 규정된 사항외에 학생의 제안 및 처리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한다.<신설 2011.09.07.>
- 제85조(위원의 선출 등) ① 해당 학교의 장은 당연직 교원위원이 된다. 학교의 장을 제외한 교원위원은 교원중에서 선출하되, 교직원 전체회의에서 2배수 추천한 자중 학교의 장이 위촉한다.<개정 2011.09.07.>
- ② 학부모위원은 민주적 대의절차에 따라 학부모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 중에서 투표로 선출한다. 이 경우 학부모전체회의에 직접 참석할 수 없는 학부모는 학

- 부모 전체회의 개최 전까지 가정통신문에 대한 회신, 우편투표, 전자적 방법(「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정보처리시스템을 사용하거나 그 밖에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하는 방법을 말한다)에 의한 투표 등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후보자에게 투표할 수 있다. 다만, 학교의 규모·시설 등을 고려하여 학부모 전체회의를 통하여 학부모위원을 선출하기 곤란하다고 위원회규정으로 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규정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급별 대표로 구성된 학부모 대표회의에서 선출할 수 있다.<개정 2011.09.07., 2020.08.11.>
- ③ 지역위원은 학부모위원 또는 교원위원의 추천을 받아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이 무기명 투표로 선출한다.
 - ④ 학부모위원 및 교원위원은 임기개시일 7일 이전에, 지역위원은 임기개시일전까지 선출한다.<개정 2020.05.28.>
 - ⑤ 운영위원회 위원(이하“위원”이라 한다)이 결원된 때에는 보궐 선출하되, 그 남은 임기가 3개월 미만으로서 위원 정수의 4분의 1 이상이 결원되지 아니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출하지 아니할수 있다.<개정 2011.09.07.>
 - ⑥ 학부모위원의 선출을 관리하기 위한 선출관리위원회와 교원위원의 추천을 관리하기 위한 추천관리위원회를 두되, 그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09.07.>
 - ⑦ 제1항부터 제2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그밖의 불가피한 사유로 학부모 전체회의, 학부모대표회의 또는 교직원 전체회의를 개최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2항 중단에 따른 방법 및 절차에 따라 학부모위원 또는 당연직 교원위원을 제외한 교원위원을 선출할 수 있다.<신설 2020.08.11.>
- 제85조의2(학교운영위원의 구성) 위원은 학부모위원, 교원위원 및 지역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정수는 해당 년도 3월 1일 현재 학생수를 기준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1.09.07.]<개정 2020.05.28.>
- 제86조(위원의 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9.07.>
③ 위원의 임기 개시일은 4월 1일로 한다.
- 제87조(위원의 자격) ①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은 국가공무원법 제33조의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지 아니 하여야 한다.

② 학부모위원 및 지역위원의 자격증 정당원에 대한 자격제한에 관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③ 위원은 다른 학교의 위원을 겸할 수 없다.

제88조(위원의 의무 등) ① 위원은 무보수 봉사직으로서 운영위원회 참석시 수당을 지급 받지 아니한다.

② 위원은 운영위원회의 회의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하며, 이를 통하지 않고서는 학교 운영에 관여할 수 없다.

③ 위원은 당해 학교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하거나 그 지위를 남용하여 재산상의 권리·이익의 취득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부모위원에게는 일반학부모가 부담하는 학교운영지원비 외에는 일체의 비용을 부담시켜서는 아니된다.

⑤ 교원위원과 학부모위원은 교직원전체회의와 학부모회의 등의 의견을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9조(위원의 퇴직) ① 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당연 퇴직된다.

1. 학부모위원은 해당 학교의 학부모의 지위를 잃었을 때 다만, 학생의 졸업으로 인한 경우는 임기 만료일까지 위원의 자격을 유지한다.<개정 2011.09.07.>

2. 교원위원은 전보 또는 퇴직된 때

3. 특별한 사유없이 3회 연속 회의에 불참한 때

② 학부모위원 선출 과정시 본인이 제출한 신상자료, 학력, 경력등의 주요내용에 허위 사실이 있는 것이 발견된 때에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그 위원의 자격을 박탈할 수 있다.

제90조(위원장 및 부위원장) ① 운영위원회에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인을 두되, 교원위원이 아닌 위원중에서 선출한다.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무기명투표로 선출하되, 재적위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④ 제3항의 득표자가 없을 때에는 2차 투표를 하여 최고득표자를 당선자로 한다. 이 경우 최고득표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개정 2011.09.07.>

⑤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운영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⑥ 위원장은 운영위원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

가 있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⑦ 위원장이나 부위원장이 궐위된 때에는 보궐선출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기간으로 한다.<개정 2011.09.07.>

제91조(서류제출 요구) 운영위원회는 그 결정으로 안건의 자문 또는 심의와 직접 관련된 서류의 제출을 당해 학교장에 대하여 요구할 수 있다.

제91조2(시정명령 신청) 운영위원회는 그 의결로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63조제4항에 따른 시정명령을 광주광역시교육감 또는 관할 교육지원청의 교육장에게 신청할 수 있다.

제92조(회의 소집 등) 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정기회의 소집시기는 당해학교 규정으로 정한다.

② 위원 선출후 최초로 소집되는 임시회는 학교장이 위원 임기개시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소집한다.

③ 임시회 소집은 학교장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위원장이 회의 개최 7일전에 소집공고와 함께 회의 안건을 첨부하여 위원에게 개별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이 긴급을 요하는 안건이라고 인정할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위원회의 회의일수 및 회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다만, 회의일수는 연 30일을 초과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회의 일시를 정할 때에는 일과 후 또는 주말 등 위원들이 참석하기 편리한 시간으로 정하여야 한다.<신설 2011.09.07.>

제93조(안건의 제출·발의) 위원회에서 자문 또는 심의할 안건은 학교장이 제출하거나 재적위원 4분의 1이상의 연서로 발의한다.

제94조(의사 등의 정족수) 운영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정한다.

제95조(회의의 공개) ① 운영위원회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교육 또는 교권의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회의를 개최할 때에 가정통신문, 학교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회의 개최일자, 안건 등을 알림으로써 일반 학부모, 교사 등이 회의에 참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11.09.07.>

제96조(회의록 작성 등) ① 운영위원회는 회의 일시, 장소, 참석자, 안건, 발언요지,

결정사항 등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여 출석위원의 성명을 기재한 후 학교장과 위원장이 서명한다.<개정 2011.09.07.>

② 위원장은 회의록을 학교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여 학부모·교원 및 지역주민 등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운영위원회에서 비공개로 결정한 사항은 공개되는 회의록에 이를 게재하지 아니할 수 있다.<개정 2011.09.07.>

③ 운영위원회는 매 학년도말에 운영위원회의 활동 상황 보고서를 작성하여 학부모·교원 및 관할교육청 등에 배포하고 차기 정기회의시 보고 하여야 한다.

제97조(소위원회의 설치) ① 운영위원회는 안건 심사의 효율을 기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다만, 학교급식소위원회는 반드시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08.08.>

② 소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은 다음 각 호에 따르며,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학교의 규정으로 정한다.<개정 2011.09.07.>

1. 소위원회는 운영위원회의 결정으로 선임된 위원으로 구성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교직원과 학부모, 외부전문가 등을 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 할 수 있다.
2.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3. 소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둘 수 있다.
4. 공동급식학교의 경우 비조리 학교의 구성원이 조리학교의 학교급식소위원회의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다.
5. 소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사항 중 운영위원회가 지정한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자문을 거친 것으로 본다.
6. 소위원회는 분야별 안전에 대한 사전조사, 자료수집·검토, 모니터링 등을 수행한다.
7. 소위원회는 활동에 대한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

제98조(간사) ① 운영위원회의 회의기록 등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에 간사를 둔다.

② 간사는 당해 학교의 행정실장이 되며, 행정실장이 없는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의 추천을 받은 교직원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제99조(운영경비 등) 위원의 연수시 교통비, 회의경비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는 규정 또는 관할청의 예산관련지침으로 정한다.

제100조(자생조직) 학부모 등으로 구성되는 학교내외의 자생조직은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율적으로 운영하거나 운영위원회의 산하단체로 둘 수 있되, 그 대표

자는 그 조직의 활동과 관련하여 운영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출석·발언할 수 있다.

제100조2(이사장의 개선요구) 이사장은 운영위원회의 운영이 제1조의 목적 또는 학교교육에 중대한 차질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때에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장을 통해 운영위원회의 심의 또는 자문 결과에 대하여 시정을 요구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0.5.28.], <개정 2022.08.18.>

제101조(규정에의 위임) 운영위원회의 구성·운영등에 관하여 이 정관에 규정하지 아니한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

제 9 장 학교교권보호위원회

제102조(학교교권보호위원회의 설치) 교원예우에관한규정(이하“영”이라 한다.)

제6조 제4항에 의거 이 법인이 설치·경영하는 광주동성고등학교,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광주동성중학교, 광주동성여자중학교에 학교교권보호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설치·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학교규칙으로 정한다.

제103조 내지 113조 (삭제 정책기획관-2350(2016.03.29.))

제 10 장 학교기업의 설치·운영

제114조(목적) 현장 지향적 실업교육을 강화하고 학교 교육과정과 직접 관련 있는 창업교육을 통한 창업마인드 조성 및 기업가 정신을 함양시켜 학생들의 산업현장 적응 능력 신장을 목적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3.03.]

제115조(학교기업의 설치) ① 학교에 산업교육 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의한 학교기업을 설치한다.

② 학교기업은 광주광역시 남구 서문대로 627번길 20 내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에

둔다.<개정 2020.05.28.>

③ 학교기업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의 각 학과 교육과정 및 동아리 활동과 연계한 사업을 내용으로 한다.

[본조 신설 2010.03.03.]

제116조(기타사항) 이 정관에서 규정한 것 외에 학교기업의 설치·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학교기업 운영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신설 2010.03.03.]

제 11 장 보 칙

제117조(공고) 이 법인이 법령과 정관 및 기타 이사회의 의결에 의하여 공고하여야 할 사항은 학교홈페이지 등에 공고한다.<개정 2020.05.28.>

[본조 변경 2010.03.03.]

제118조(시행세칙) 이 정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칙으로 정한다.

[본조 변경 2010.03.03.]

제119조(설립당시의 임원) 이 법인의 설립당초의 임원은 다음과 같다.

직 위	성 명	생년월일	임 기	주 소
이사장	지 우 선	1896.04.26	47.02.17~56.04.02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360
이 사	최 동 복	1915.02.07	47.02.17~97.10.27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81
이 사	백 형 채	1916.05.05	47.02.17~68.11.10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14
이 사	최 동 열	1915.03.10	47.02.17~57.02.06	광주광역시 동구 대인동 47
감 사	조 창 준	1895.09.22	47.02.17~49.04.28	광주광역시 서구 서동 77-4
감 사	김 태 호	1905.10.05	47.02.17~49.04.28	광주광역시 북구 북동 272

[본조 변경 2010.03.03.]

부 칙[문보 제16호(1947. 01. 11.)]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관 제685호(1962. 02. 14.)]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관 제1921호(1962. 05. 28.)]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0. 3-331(1964. 01. 30.)]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2. 3-1117(1964. 04. 17.)]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전남교문 1042. 3-1966. 12. 27.]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정 1040-2610(1972. 04. 10.)]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 3-2882(1973. 10. 25.)]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문정 1042. 3-1677(1975. 12. 06.)]

이 정관은 문교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1042. 3-1031(1977. 07. 07.)]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77년 7월 7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별표 1 및 별표 2의 각 지급에 임용된 사무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용된 것으로 본다.
- ③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중 제41조의 6 제2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자는 이 정관 시행후 6개월 이내에 퇴직한다.
- ④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의 사무직원이 이 정관에 의한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사무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사무직원의 신규 임용을 하지 못한다.

부 칙[관리 1042. 3-1076(1981. 09. 11.)]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1년 09월 11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학교의 장을 제외한다) 및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당해 이사장이 임명한 것으로 본다.
- ③ (학교의 장 임기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학교의 장 임기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④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종전의 정관에 의하여 임용되어 근무하는 일반직원이 이 정관에 의하여 정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반직원이 퇴직할 때까지 그 정원이 따로 있는 것으로 보되, 일반직원의 신규 임용은 그 초과하는 정원이 있을 때에는 채용하지 못한다.

부 칙[관리 1042. 3-18(1984. 01. 05.)]

이 정관은 교육부장관의 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관리 25423-1222(1986. 10. 1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86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
- ②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그 임기 만료시 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관리 25422-747(1989. 12. 28.)]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6조(하부조직) 중학교에 서무과를 두며, 과장은 주사로 보 하되 그 분장 업무는 규칙으로 정한다.
- ②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부 칙[관리 25422-735(1990. 11. 2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0년 11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교원징계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교원징계위원회 및 재심위원회에 계류중인 징계 및 재심사건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 ③ (일반직원에 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일반직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임명한 것으로 본다.

부 칙[관리 25422-370(1992. 05. 28.)]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임원의 종류와 정수) 이 법인에 다음의 임원을 둔다. 이사 9인(이사장 1인을 포함) 감사 2인

부 칙[관리 25422-682(1992. 10. 28.)]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2년 10월 28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6장 제3절(제52조 내지 제65조) 삭제
- ③ (징계 및 재심청구) 1. 일반직원의 징계는 사립학교 교원에게 적용하는 규정을 준용하되, 일반직원 징계위원회는 법인에 따로 두어야 한다.
- 2. 일반직원의 재심청구를 위하여 법인에 일반직원 재심위원회를 두되, 그 조직 및 운영등에 관하여서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따로 인사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행정 81422-1067(1993. 12. 2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 ② (명예퇴직수당) 1. 교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한 자가 교육공무원법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공무원 정년을 기준하여 그 이전에 자진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2. 제1항에 의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와 명예퇴직수당지급액은 국가공무원명예퇴직수당지급규정을 준용한다.
- 3. 임면권자는 다음 각호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내에서 명예퇴직수당지급대상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부 칙[행정 81422-192(1993. 03. 04.)]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3년 3월 4일부터 시행한다.
- ② (주소) 이 법인의 사무소는 광주직할시 서구 진월동 산 188번지에 둔다.

부 칙[행정 81414-365(1995. 05. 12.)]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5월 12일부터 시행하되, “직할시를 광역시”로 변경은 1995년 1월 1일부터 적용하고 “서구를 남구”로의 변경은 1995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행정 81422-460(1995. 06. 20.)]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5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 ② 제13조 1항 “이사 9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 을 “이사 7인(이사장 1인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부 칙[행정 81422-672(1996. 07. 25.)]

-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6년 7월 25일부터 시행한다.
- ② (별표 2)중 제1호 내지 제4호를 별지 와 같이 한다.

부 칙[행정 81422-385(1998. 04. 09.)]

- ① (시행일) 이 규정은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행정 81422-653(98. 06. 2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1998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② 제1조중, “초등보통교육”을 “초등교육”으로하고 “중등보통교육 고등보통교육”을 “중등교육”으로 한다.

부 칙[행정 81422-900(1998. 09. 0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1998년 9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 (이사에대한 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당시 재임중인 이사는 제16조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그 임기만료시까지 이 정관에 의하여 취임된 것으로 본다.

부 칙[기예 81422-463(2000. 06. 2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6월 21일부터 시행한다.

② (최초의 규정) 이 정관 시행 후 최초로 제정되는 학교운영위원회 규정은 당해 학교 교원 및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하여 학교장이 정한다.

③ (최초의 위원 임기개시 및 만료) 최초로 선출되는 위원의 임기는 정관에서 정한 임기에 관한 규정에 불구하고 학교운영위원회의 최초 소집일로부터 개시하며, 차기 학교운영위원회 위원 임기개시일 전일에 만료한다.

부 칙[기예 81422-661(2000. 08. 2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예 81422-690(2000. 09. 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0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예81422-108(2001. 02. 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2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기예81422-623(2001. 09. 1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22-238(2002. 04. 1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인가한 날부터 시행하되, 제16조 제2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200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기예81422-328(2002.05.1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예81455-862(2003.12.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4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5141(2005.09.0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5년 09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6808(2005.11.1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1월 0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기획예산과-4957(2006.08.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6년 08월 07일부터 시행한다.
② (임원 선임기간이 예외) 개정 정관 시행일 이후 임원의 임기만료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우선적으로 선임되는 개방이사 또는 감사는 제15조의 4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결원발생일로 부터 2월 이내에 보충할 수 있다.

부 칙 [기획예산과-1346(2007.02.2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2월 2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5694(2007.08.0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08월 09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8030(2007.10.1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7년 10월 1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769(2008.04.04.)]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4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4629(2008.06.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6월 2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5716(2008.08.08.)]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8년 8월 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041(2009.03.0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09년 3월 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2002(2010.03.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3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행정지원과-6325(2010.07.16.)]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0년 7월 16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예산과-7905(2011.09.0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9월 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예산과-12455(2011.12.1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1년 12월 19일부터 시행한다.
② 다만, 제43조(교원징계위원회의 조직) 제1항 개정은 2012년 3월 1일부터 적용한다.

부 칙 [행정예산과-2375(2012.03.02.)]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2년 3월 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행정예산과-15755(2013.12.31.)]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1월 17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교육인사과-5637(2014.04.0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책기획관-2350(2016.03.29.)]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4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정책기획관-4307(2016.06.2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6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17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은학원-27)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은학원-230)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5월 2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은학원-33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8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은학원-493)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0년 1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 개방이사 자격요건 제한은 해당 개방이사 임기가 종료 될 때까지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부 칙(유은학원-165)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2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유은학원-477)

① (시행일) 제34조(임용) 6항의 개정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35조(휴직의 사유) 제1항 및 제2항 개정 규정, 제37조(휴직의 신분) 제2항 개정 및 제4항 신설 규정은 2022년 2월 1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2년 8월 18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제67조의3(근속승진제)항의 개정 규정은 2023년 1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정관은 2023년 08월 04일부터 시행한다.

② 단, 제68조의2(공로연수) 규정은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법 인 일 반 직 원 정 원

총 계	4명
일 반 직(교육행정) 계	3명
4급(서기관)	1명
6급(주 사)	1명
8급(서 기)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1명
9급(지방사무운영서기보) 계	1명

[별표 2]

학 교 일 반 직 원 정 원

1. 광주동성고등학교	
총 계	6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3명
5급(사무관)	1명
6급(주사) 또는 7급(주사보)	1명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3명
9급(지방사무운영서기보)	1명
9급(지방시설관리서기보)	2명
2. 광주여자상업고등학교	
총 계	5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2명
6급(주사)	1명
7급(주사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3명
9급(지방사무운영서기보)	1명
9급(지방시설관리서기보)	2명
3. 광주동성중학교	
총 계	4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2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2명
9급(지방사무운영서기보)	1명
9급(지방시설관리서기보)	1명
4. 광주동성여자중학교	
총 계	4명
일반직(교육행정) 계	2명
6급(주사)	1명
8급(서기) 또는 9급(서기보)	1명
일반직(관리운영 또는 기술직군) 계	2명
9급(지방사무운영서기보)	1명
9급(지방시설관리서기보)	1명

[별지]

기본재산목록

1. 교육용 기본재산

가. 토지

(단위 : 원)

소재지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	비고
시군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학교용지	56,280	38,321,052,000	
		"	391-4	"	5,138	3,498,464,200	
		"	406-4	"	2,176	1,481,638,400	
		"	400	전	1,636	510,104,800	
		"	387-3	"	84	18,925,200	
		송하동	산40-2	임야	774	314,321,400	
		진월동	산203	"	385	134,172,500	
		"	산201-1	"	496	36,009,600	
		"	산201-3	"	1,237	160,315,200	
		송하동	산42	"	56	24,477,600	
		"	산42-3	"	175	17,490,000	
		계			68,437	44,516,970,900	
				학교용지	63,594	43,301,154,600	
				전	1,720	529,030,000	
				임야	3,123	686,786,300	
		총계			68,437	44,516,970,900	

나. 건물

시군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건평(㎡)	평가액	비고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광주동성고 동) 상고 지하층	6,612.80	1,292,782,500	도 서 실 강 의 실 " " "
				" 1 층	328.00		
				" 2 층	1,260.80		
				" 3 층	1,256.00		
				" 4 층	1,256.00		
				" 5 층	1,256.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동성중학교 동) 동성중 지하층	4,485.38	876,873,300	도 서 실 강 의 실 " " "
				" 1 층	457.50		
				" 2 층	807.88		
				" 3 층	805.00		
				" 4 층	805.00		
				" 5 층	805.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3층 건물 (체육관 동) 체육관 1 층	2,851.00	557,361,900	운 동 시 설 " " "
				" 2 층	1,082.00		
				" 3 층	1,451.00		
				" 중3층	336.00		
				"	18.00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건평(㎡)	평가액	비고
시군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2층 건물 (유은관동) 사무실 1층	779.36 427.79	152,362,500	사무실 "
				" 2층	351.57		
				광주광역시	남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조적조 (정문 및 수위실) 수위실 1층	45 45	8,797,3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광주여상고 동) 광주여상 지하층	7,304.27 381.95	1,728,000,940	급식소 강의실,급식소 강의실 급식소증축 강의실 " "
				" 1층	1,475.75		
				" 2층	1,480.24		
				" 2층	196.08		
				" 3층	1,256.75		
				" 4층	1,256.75		
				" 5층	1,256.75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건평(㎡)	평가액	비고
시군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5층 건물 (동성여중 동) 동성여중 지하층	4,464.32 435.00	872,761,100	도서실 강의실 " " " "
				" 1층	809.32		
				" 2층	805.00		
				" 3층	805.00		
				" 4층	805.00		
				" 5층	805.00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생활관 동) 생활관 1층 생활관 2층	976.05 525.15 450.90	190,842,900	동성여중 광주여상고 가사실습실 도서실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다목적강당) 1층	858.02 858.02	1,333,329,000	광주여상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다목적교실(1층) 교실(2층) 다목적교실(3층) 생활관(4층) 생활관(5층)	1,476.75 301.68 301.68 291.13 291.13 291.13	944,501,000	동성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3층) 동아리모듬학습실1층 동아리모듬학습실2층 동아리모듬학습실3층	723.35 245.57 318.42 159.36	1,170,970,840	동성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1층) 옥외화장실	12.6 12.6	22,340,000	동성여중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건평(㎡)	평가액	비고
시군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3층)	1,210.5	1,354,597,170	시청각실 (광주여성)
				시청각실 1층	401.63		
				특별교실 2층	421.31		
				특별교실 3층	387.56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조립식판넬조	5	8,200,000	후문경비실 (동성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조립식판넬 야구훈련장1	546.82	587,307,000	동성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조립식판넬 야구훈련장2	225	240,262,000	동성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조립식판넬 관람석	55.6	62,290,450	동성중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06	철근콘크리트 옥외화장실	15.6	26,320,000	동성중
합 계					33,348.34	11,540,616,600	

2. 수익용기본재산

가. 토지

(1) 대지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남구	봉선동	114-2	대지	195	647,400,000		
			주월동 (봉선동)	1254-5 (1123-12)	"	143.5	157,850,000	
			진월동	424-10	"	23	62,008,000	
	동구	동명동	209-84	"	143	112,326,500		
			대인동	320-3	"	223.6	301,860,000	
			충장로5가	62-9	"	1,286.6	1,959,491,800	
	북구	북동	105	"	168.6	78,162,960		
			임동	36-2	"	344	416,928,000	
			북동	104-17	"	145.5	110,798,250	
	서구	양동	24	"	162	162,486,000		
			25	"	191.7	106,489,350		
			25-4	"	39.7	22,271,700		
			25-5	"	29.8	16,717,800		
			25-6	"	95.9	47,940,410		
			25-7	"	152.1	84,491,550		
			25-9	"	56.2	30,280,560		
			25-10	"	181.8	100,989,900		
			25-11	"	39.7	7,277,010		
			25-12	"	26.4	24,552,000		
25-13			"	155.4	86,324,700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25-60	대지	13.9	13,314,810	25-14분할
		양동	25-15	"	86	54,171,400	
		양동	25-16	"	69.4	76,825,800	
		양동	25-17	"	105.8	109,503,000	
		양동	25-18	"	7.6	7,622,800	
		양동	291	"	616	274,181,600	
		양동	291-2	"	217	96,586,700	
전남 담양군	담양읍	학동리	187-2	"	264	21,595,200	
합 계					6,751.7	5,190,447,800	

(2) 전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서구	금호동	417-2	전	1,091	105,281,500	
합 계					1,091	105,281,500	

(3) 답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남구	진월동	425-1	답	183	493,368,000	
		진월동	426-1	"	298	803,408,000	
합 계					481	1,296,776,000	

(4) 임야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	산43-1	"	3,194	680,002,600	공원부지
			산43-5	"	124	48,905,600	
			산43-6	"	15	5,916,000	
			산43-8	"	9,464	663,426,400	
합 계					12,797	1,398,250,600	

(5) 도로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동	209-29	도로	307	66,956,700	
		동명동	209-43	"	58	11,060,600	
		동명동	209-55	"	215	43,279,500	
		동명동	209-77	"	10	2,013,000	
		동명동	209-88	"	2	518,400	
		동명동	209-94	"	20	3,744,000	
		동명동	209-101	"	179	33,508,800	
		동명동	209-105	"	7	1,310,400	
		동명동	209-147	"	54	10,297,800	
		동명동	209-150	"	91	17,353,700	
		동명동	209-152	"	15	2,860,500	
		동명동	212-6	"	34	7,901,600	
		동명동	218-10	"	5	1,162,000	
		동명동	218-19	"	10	1,872,000	
		계림동	71-2	"	73	20,242,900	
		산수동	487-20	"	20	3,560,000	
		산수동	487-30	"	16	2,848,000	
		산수동	487-31	"	63	11,214,000	
		산수동	487-32	"	12	2,136,000	
		산수동	487-33	"	117	20,826,000	
전남 담양군	금성면	대성리	657-5	"	7	126,700	
		대성리	657-6	"	10	181,000	
합 계					1,358.1	271,040,830	

(6) 철도용지

시군	구면	동리	지번	지목	지적(㎡)	평가액(원)	비고
광주광역시	동구	계림동	91-8	철도용지	3	739,500	
합 계					3	739,500	

나. 건물

소재지			지번	건물구조	건평(㎡)	평가액	비고
시군	구면	동리					
광주광역시	남구	주월동 (봉선동)	1254-5 (1123-12)	철근콘크리트	446.92	186,854,873	
		봉선동	114-2	철근콘크리트	299.842	148,777,060	
		진월동	426-1	철근콘크리트	550.54	461,000,590	
	동구	충장로5가	62-9	철근콘크리트	2,264.85	353,809,188	
합계					3,562.152	1,150,441,711	

다. 현금

연번	투자내역	금액	예금주	비고
1	정기예탁금	500,000,000	유은학원	만기이자지급식
2	정기예탁금	16,120,000	"	"
3	정기예탁금	680,000	"	"
4	정기예탁금	7,960,000	"	"
5	정기예탁금	23,961,000	"	"
6	정기예탁금	29,680,000	"	"
7	정기예탁금	251,274,294	"	"
8	정기예탁금	72,628,000	"	"
9	정기예탁금	82,576,680	"	"
10	정기예탁금	104,860,000	"	"
11	정기예탁금	472,000,000	"	"
12	정기예탁금	92,206,080	"	"
13	정기예탁금	78,868,400	"	"
14	정기예탁금	3,841,000	"	"
15	정기예탁금	115,242,500	"	"
16	정기예탁금	2,000,000,000	"	"
17	정기예탁금	45,890,000	"	"
18	정기예탁금	6,105,850	"	"
19	정기예탁금	400,000,000	"	"
20	정기예탁금	100,000,000	"	"
21	정기예탁금	40,000,000	"	"
22	정기예탁금	1,300,000,000	"	"
23	정기예탁금	400,000,000	"	"
24	정기예탁금	100,000,000	"	"
25	정기예탁금	26,056,850	"	"
26	정기예탁금	11,968,667	"	"
합계		6,281,919,321		

라. 주식

연번	발행기관	발행번호	취득일자	보유수량	평가금액	보유방법	비고
1	매일방송		2011.05.26.	40,000	300,000,000 (7,500원×40,000주)	증권사 예탁 (미래에셋증권 032-99-019692)	

※ 취득일자는 증권사 예탁일자/ 평가금액의 7,500원은 매수단가